

춘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513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5130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6가단314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서인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F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봉진

변론 종결2020. 8. 20.

판결 선고2020. 9. 24.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6가단314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2. 23. 접수 제3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원고 B, C, D, E

1)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가) 원고 E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16,776,944/323,910,000 지분,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140,555/2,713,680 지분, 같은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2,006,417/38,737,600 지분, 같은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5,023,760/96,993,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7,055,245/323,910,000 지분,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59,108/2,713,680 지분, 같은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843,763/38,737,600 지분, 같은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2,112,653/96,993,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에게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각 21,502,402 /323,910,000 지분,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각 180,144/2,713,680 지분, 같은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각 2,571,552/38,737,600 지분, 같은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각 6,438,771/96,993,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E에게 21,397,117원, 원고 B에게 8,998,176원, 원고 C, D에게 각 27,423,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원고 B, C,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위척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 D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그의 처인 H과 사이에 피고, I, J총 3명의 자녀를 두었다. H이 1994. 7. 17. 사망한 후 G은 1997. 6. 18. 원고 E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 E와 사이에 원고 A, B, C, D 총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G은 2015. 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2. 1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 D, E의 주위적 청구

망인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원고 B, C, D, E의 예비적 청구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들을 증여함으로써 원고 B, C, D, E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 D, E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나. 망인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능력 존재 여부

갑 제19 내지 22, 25 내지 32, 40, 47, 48, 52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AG, AH요양병원장, A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증여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 흠결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 1) 망인은 AI생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88세의 고령이었다.
- 2) 망인은 2015. 1. 13.부터 2015. 1. 20.까지 AH병원에서 치매와 전립선암, 장염,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 20.부터 2015. 2. 10.까지 AI병원에서 위막성대장염과 연하곤란, 관상동맥질환, 배뇨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요양시설인 AG에 입소하여 2015. 2. 16.까지 위 기관에서 요양을 하였다.
- 3) AH요양병원에서 2015. 1. 13.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이하 'K-MMSE'라 한다) 결과는 12점1) 으로 망인은 계절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를 보였다.

위 병원 의사 AK은 그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장기 기억력은 경미한 장애, 단기 기억력은 심한 장애, 일상생활은 준와상상태로 부분 의존의 치매환자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 13. '의식 및 정신상태 - 자신의 기능수준을 과대평가하거나 잊어버림', 2015. 1. 19. '○ 식사하기 - 상당한 도움. 인지 기능의 저하로 식사 시 직원의 수발이 필요하다. 가끔 수저질은 가능하다. ○ 체위 변경하기 - 상당한 도움. 인지 기능의 저하로 체위 변경 시 자세 잡아주고 유도한다. ○ 화장실 사용하기 - 상당한 도움. 대·소변 실금으로 기저귀 착용함. 대·소변 받고 있다. 조절 못하고 지린다.'는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4) SI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 24. '입원 이후 잠을 못 자고 앓는 소리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지남력의 상실 양상 보여 정신과 협진의뢰 되었다.', '치료자의 질문에 소리를 지르며 대답하는 모습.', '환자와 면담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섬망(delirium)2) 이 의심되는 상태로 전신상태(general condition)의 호전이 증상 호전에 가장 중요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적절한 지남력에 대한 자극이 증상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5. 1. 25. 및 2015. 1. 26. '여기가 병원인지 환자가 장소에 대한 지각력이 떨어진다.', 2015. 1. 27. '밤에 잠을 안자고 소리 지르고 흥분한 모습 보여 병실 다른 환자들과 싸웠다고 함. 매일 밤 처치실에 있음.', 2015. 2. 3. 내지 같은 달 5. '설사는 매일 비슷하다. 복통은 아직도 있다. 자꾸 기저귀에 손을 넣고 본인의 대변을 만지고 이불과 옷에 묻히는 등의 모습을 보임. 행동조절을 위하여 퀘에타핀(항정신약물) 25mg 1.5알을 투여하여야 했음. 빈혈수치 7-9 사이 심한 빈혈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5) 건강보험공단은 2015. 2. 5. 망인에 대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하였다.

6) AG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정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입소 당시부터 연하곤란과 소변 조절이 안 되어 비위관을 통한 식이섭취와 도뇨관이 필요한상태였고, 2015. 2. 13. '○ 신체상태 - 완전 도움, ○ 신경계 - 치매, ○ 인지상태 - 환각, 반복적인 활동, ○ 의사소통 -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 ○ 발음능력 - 간혹 어눌한 발음이 섞인다. ○ 총평 - 완전 와상상태이며 수발자의 완전 도움이 필요하며 망상증이 있어 큰소리로 소리까지 지르심.'이라는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 요양기관에서도 2015. 2. 14. 망인에 대하여 K-MMSE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앞서 본 2015. 1. 13.자 K-MMSE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절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위 요양기관은 망인의 그 당시 상태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2. 11. 입소 당시부터 하체 사용이 불가하여 이동시 휠체어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손 경우도 간단한 움직임은 가능하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급여제공자가 전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수급자 스스로 세면, 양치, 목욕, 머리감기, 환경정리 등에 있어 신체적 제한과 인지 부분에 따른 제한으로 수행 자체가 안 되어 일상생활 영역 전체에 있어 완전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당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도 퇴사상태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또한 너무 오래되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원들끼리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은 어르신이 와상이어서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 있어 완전도움을 제공했다는 부분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는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의견이 같았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7)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 AL은 '망인과 같이 K-MMSE 검사에서 계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임상치매척도 검사(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결과는 대부분 2~33)을 보이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말하며, 망인의 위와 같은 진료기록에 근거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환자의 인지기능은 부동산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장기간 투병생활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신체 및 정신 상태가 악화 및 호전 등을 반복한 점을 간과하였고, 요양병원의 특수한 관행에 의거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의무기록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의 기재 등을 근거로 과장하여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이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특정하여 확정적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 D, E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 D, E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며, 이와 같이 원고 B, C, D, E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정

판사신흥호

판사송종선

별지

1) K-MMSE는 ① 지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10점(= 시간 5점 + 장소 5점), ② 기억등록 3점, ③ 주의집중 및 계산 5점, ④ 기억회상 3점, ⑤ 언어 및 시공간 구성 9점 등 총점 30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검사 결과 ① 0-17점은 심각한 인지기능 장애(severe

cognitive impairment), ② 18-23점은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③ 24-30점은 인지적 손상 없음(no cognitive impairment)으로 평가한다.

2)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3) CDR 결과 0점은 치매가 아님, 0.5점은 치매가 의심스러움, 1점은 경도 치매, 2점은 중등도 치매, 3점은 심한 치매, 4점은 매우 심한 치매, 5점은 말기 치매를 의미한다.